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51

발의연월일: 2022. 11. 21.

발 의 자:유의동・金炳旭・강대식

김학용 • 한기호 • 윤주경

유경준 • 안병길 • 윤한홍

김성원 • 박정하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 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1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안 제14조제4항)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안 제14조제3항)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협의회"라 한다)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로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자가 되고"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를 "상임위원이 겸임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 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 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 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 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하고.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③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은 다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 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장의 제 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 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 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 · 도지사가 임명 또 임명하거나 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한다.

| 1 | ~ | 1 | (생 | 략) |
|----|---|----|-----|-----|
| Ι. | | 4. | 1.7 | - i |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⑥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4 |
| <u>상임위원이 겸임하며</u> |
| |
| |
| |
| |
| |
| (5)·(6) (현행과 같음) |